

2020년 제4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0년 제4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5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등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문임기제 나급 (5급상당)	1명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관장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업무 총괄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상당)	1명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부장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 등 실무 총괄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진행·관리 및 행정 실무 총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2명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팀장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 등 담당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진행·관리 및 행정 담당 등

임용분야	등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1명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 등 담당 ◦ 청소년 교육 및 활동사업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1명	◦ 예산·회계·사무 ◦ 직원복무 관리 ◦ 행정업무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2명	◦ 청소년 교육 및 활동사업 ◦ 청소년위원회 및 단체관리 ◦ 청소년 프로그램 등

3. 임용기간

● 임용기간: 1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4. 응시자격 요건

● 일반요건(공통사항)

- 연령: 만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자격요건【적용기준알 원서접수마감일】

•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직급	임 용 자 격
전문임기제 나급 (5급상당)	가, 나, 임용 자격요건 중 각각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채용직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상당)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 일반행정 -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 경력 ※ 우대사항: 청소년지도관련 자격증소지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또는 청소년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 경력 ※ 우대사항: 청소년지도관련 자격증소지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소지자 등) 또는 청소년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 ※ 청소년 전담 업무 분야 경력인정 범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5. 보수 및 복무

● (연봉책정 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전문임기제 나급	82,223	46,734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6,425	44,261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4,289	38,558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47,627	33,974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1,937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시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근무시간)

- 전문임기제: 주 40시간(1일 8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1일 7시간)

- * 점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조기 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필요

● (근무장소) 고성군청소년수련관

●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성군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 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능 가능. 단, 최초 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공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자(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6.12.(금) ~ '20.6.22.(월)	'20. 6. 23.(화) ~ 6. 25.(목)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 6. 29.(월)	'20. 7. 7.(화)	'20. 7. 9.(목)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함.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재공고시 1차 서류전형 응시자는 접수한 것으로 간주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4.5cm) 1매 별도제출

•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1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및 다급: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및 마급: 5,000원

- 수납방법: 고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내 인증기 수납

● 이력서 1부 (붙임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A4 2매 내외로 자유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서식, A4 3매 내외로 자유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분부터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처,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

8.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으로 작성
- **접 수 처:**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4층), ☎055-670-2093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여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 수수료는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9.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10. 기타(유의) 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문의처
 - 직무관련: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담당 ☎ 055-670-4662
 - 채용관련: 행정복지국 행정과 인사담당 ☎ 055-670-2093

【코로나19 예방조치 이행 협조 및 당부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면접응시 불가**

*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시험관리관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진행불가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등급	선발예정인원
청소년수련관 관장	전문임기제 나급(5급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경남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관장 ○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업무 총괄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

필요지식	○ 청소년수련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관련분야: 청소년육성		
응시자격 요건	일반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가	가, 나의 임용 자격요건 중 각각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